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27호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지 않고 정한 사항보다 훈령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반영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훈령에서 부품제작자증명 의무사항 등을 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27조)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22년 6월 3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044-201-4292,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